



IMO News Brief

The 12th session of the Sub-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IMO Instruments
Korean Register



주요 결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제12차 회기는 2026년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PSC 신입직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해양사고조사 코드(CI Cod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및 이행지침 검토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및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지원하는 전문위원회로서,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각국이 동질의 협약 준수 수준을 갖추고 IMO 협약과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번 회기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2025년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206(34))에 대한 개정안 논의
 - 선박의 기계설비 및 유지보수 검사에 대한 PSCO 지침서 개발
 - PSCO 자격요건의 개정
- 2025년 HSSC 검사지침(Res.A.1207(34))에 대한 개정안 논의
 - 최신 IMO 협약 개정사항, 도선사용 승강장치 관련 사항 반영
 - 원격검사 코딩 시스템 도입
- 선박의 기국 이전에 관한 MSC/Circ.1140 및 MEPC/Cir.424 개정안* 최종 확정
 - * 새로운 기국을 확보하지 못한 채 등록 말소된 선박에 대한 통보체계 도입

마지막으로, 본 Brief 가 많은 분들이 III 12 의 주요 결과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CI Code 및 이행 지침 검토

요약

결정사항	해양사고 조사보고서의 품질·적시성 제고를 위해 CI Code 및 이행 지침을 검토하고,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개정안을 추가 개발하기로 함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미정 (2028년 완료를 목표로 CI Code 및 이행 지침 개정 추진)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3/Annex 6, 7

배경

III 전문위원회는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0, '25.6.)의 결정에 따라 2028년 완료를 목표로 CI Code(Casualty Investigation Code, 해양사고조사 코드) 및 이행 지침(Resolution A.1075(28)) 개정 작업에 착수함.

주요 논의결과

해양사고 조사보고서의 품질과 적시성 제고를 위해 CI Code 및 이행 지침의 관련 조항, 정의, 권고관행의 강제화 가능성, 코드와 지침 간 정합성 및 실무 경험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함. 다만, 시간 제약으로 구체적인 개정 논의는 향후 개설될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재개발하기로 함.

- CI Code 및 이행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조사 원칙, 조사기관 독립성, 보고서 제출·갱신 시한, non-SOLAS 선박 적용, 사고 정의 및 조사증거 활용 제한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함.
- 매우 중대한 해양사고의 보고 지연 시 예비보고서·중간성명서를 통한 정보 공개 방안과 관련국 간 통보·협력 절차 및 표준 통보 양식 도입 방안을 논의함.

영향분석

향후 CI Code 및 이행 지침 개정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주관청과 사고조사기관은 관련 논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PSC 활동과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

요약

결정사항	PSCO 자격요건 및 선박의 기계설비 및 유지보수 검사에 대한 PSCO 지침서의 개발에 대하여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검토 후 III 13에 보고 요청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III 13 에서 개정안을 최종화 후 A 35 채택예정('27 년 12 월 예상)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4

배경

전 세계 항만국통제(PSC) 활동 및 절차의 조화로운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되었다.

- 최근 선박 기관고장 및 정비불량이 해양사고와 PSC 출항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PSCO가 선박의 기관설비 및 정비 상태를 일관되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항만국통제 절차서(Res.A.1206(34), 이하 “절차서”)의 새로운 부속서로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됨.
 - 행정역량이 부족한 주관청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절차서 개정을 통한 PSCO 자격 요건의 완화*가 제안됨.
- * 절차서에 PSCO는 ‘기국검사관(FSCO)’로 자격을 갖춘 경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마살 제도는 동 요건의 삭제를 제안함.

주요 논의결과

- (PSCO를 위한 선박 기계설비 지침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회원국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었으나, 일부 회원국에서는 제안된 지침서가 상세한 기술적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 점 등을 이유로 PSCO 교육훈련 매뉴얼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III 12는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함.

-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지침서를 추가로 검토 및 개발할 것
 - 이를 절차서의 새로운 부록(Appendix)으로 추가하고, III 13에서 최종 확정할 것
- (PSCO 자격요건) III 12는 동 의제의 중요성 및 제기된 일부 주관청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작업반을 개설하여 상세 검토를 진행함.

작업반에서는 편의치적국(FoC) 및 소규모 주관청을 중심으로 지지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으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영국, 일본, 이탈리아 및 Paris MoU 등은 현행 규정의 유효성을 강조함.

특히 PSCO의 자격 및 역량은 조화로운 항만국통제의 신뢰성 및 효과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선부르게 특정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논의 끝에 회원국들은 최소한의 요건을 보장하는 다양한 대체안을 제시함.

III 12는 쟁점이 PSCO의 역량확보 여부(유능한 PSCO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음)가 아닌, 적절한 최소 자격요건 및 훈련 경로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였음. 따라서 동 의제를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절차서 1.9.1 (PSCO의 자격요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함.

영향분석

- (PSCO를 위한 선박 기계설비 지침서) 제안된 지침서는 일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절차서의 부록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동 제안의 배경이 해양사고 및 PSC 출항정지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의 기계 설비 및 유지보수라는 점에 대해서 회원국들 사이에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해당분야에 대한 더욱 엄격한 항만국통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 가능함.

그러므로 관련 산업계는 향후 결정 사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제시된 지침서에 기기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ISM Code 이행의 중요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권고됨.

- (PSCO 자격요건) PSCO 자격요건과 교육훈련 체계(training pathways)가 개정

될 경우, 각국 항만국통제 당국은 검사관의 선발, 훈련, 현장실습, 평가 및 권한부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PSC 신입직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

요약

결정사항	III 8에서 최초 제안(III 8/6)되고, 금번 회기에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매뉴얼 초안을 발전시켜 지역별 MoU 의견 수렴 후 III 13에 최종 보고 요청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III 13에서 개정안을 최종화 후 A 35 채택예정('27년 12월 예상)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4

배경

전 세계 항만국통제(PSC) 활동의 일관성 및 조화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PSC 검사관 신입직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논의됨.

III 12는 IMO Model Course 3.09 개정 이후 검토하기로 하였던 III 8의 결정사항을 상기하고, 아일랜드 및 Caribbean MoU의 제안에 따라 작업반을 개설하여 동 의제를 상세히 검토함.

주요 논의결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신입직 PSCO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통 교육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작업반에서 일부 회원국이 교육과정에 해사노동협약(MLC, 2006)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여 이를 추가하기로 합의함. 또한 기존 초안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문서 구조 및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함.

III 12는 중국이 작업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뉴얼 초안을 추가로 개발하고, 모든 지역 MoU에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III 13에 최종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함.

영향분석

PSC 신입직 교육훈련 매뉴얼이 최종 승인될 경우, 각국 항만국 통제당국은 신입 PSCO의 기본교육, 현장실습, 평가 과정에 있어 공통적인 입문용 교육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관련 산업계는 향후 매뉴얼 개발 및 승인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선사는 PSCO 교육수준 및 검사 접근 방식이 보다 표준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PSC 대응 체계 및 관련 국제협약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HSSC 검사지침

요약

결정사항	2027년 말까지 발효되는 협약 개정사항을 HSSC 검사지침에 반영하고, 선박 비치 증서 및 문서 목록 개정안과 선박의 국가 간 이적에 관한 회람문서(MSC/Circ.1140-MEPC/Circ.424) 개정안을 확정함
------	---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III 13 에서 개정안을 최종화 후 A 35 채택예정('27 년 12 월 예상)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5/Annex 1, 2, 4, 5, III 12/10/Annex 4, 5

배경

HSSC 검사지침(Res. A.1207(34))을 최신 협약 개정사항에 맞춰 정비하고, 향후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임. 2027년 말까지 발효되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HSSC 검사지침 개정안과 2028년 발효 예정인 도선사용 승강장치 관련 개정안을 검토함. 아울러 원격검사 코딩시스템, 선박의 국가 간 이적 절차, 선박 비치 증서·문서 목록도 함께 논의함.

주요 논의결과

- (HSSC 검사지침 개정) 2027년 말까지 발효되는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HSSC 검사지침 주요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하역장치·앵커 핸들링 원치, PFOS 소화약제 제한, 전자경사계 및 NOx Technical Code의 합리적 배출제어전략 관련 사항을 검사항목에 포함함.
- (도선사용 승강장치 검사 항목) III 12는 Option 2*를 기초로 SOLAS V/23 규칙 및 Res.MSC.576(110)에 따른 세부 검사 항목을 검토하고, 관련 개정안을 확정함.

*Option 2: 갑판 고정 지점, 도선사용 사다리·맨로프, 사다리 고정수단, 결합형·트랩도어 배치, 갑판 접근수단, 관련 장비·조명, 관련 장비의 사양 및 인증 유효성, 유지보수 계획·기록, 선내 친숙화 기록 및 담당사관 통신수단 확인 등을 포함한 검사항목.

- (원격검사 코딩시스템) HSSC 검사지침에 원격검사 적용 가능성을 표시하는 신규 열과 항목별 코딩시스템 도입을 검토함. 다만, 작업의 복잡성과 시간 제약으로 코딩시스템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으며,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개발하여 2027년 7월 III 13에서 마무리할 예정임.

- 최초·정기검사는 원격검사 대상이 아니나, 그 일부인 도면승인 및 문서검토는 원격 수행이 가능하므로 "Y"로 표시될 수 있음을 HSSC 검사지침 내 설명문에 명시하기로 함.
- "Y", "N", "C" 코드의 설명문 및 삽입 위치는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추가 개발하기로 함.
- 향후 실제 적용 경험과 시행상 문제점을 반영하여 코딩시스템을 보완하고, 부속서 5의 코딩 방법론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함.

- (선박의 국가 간 이적 절차) 협약요건 부적합 사항으로 인해 선박이 기존 기국에서 등록 말소되었으나 새로운 기국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의 국가 간 이적에 관한 회람문서 (MSC/Circ.1140-MEPC/Circ.424) 개정안을 검토함.

개정안은 기존 기국이 새로운 등록 없이 선박을 등록 말소한 경우 선박 식별 정보, 등록 말소일 및 부적합 사항의 요약 정보를 IMO에 통보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IMO를 통한 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일시적으로 무국적 상태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동 개정안은 MSC 112 및 MEPC 85에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이며, 무국적 또는 유기 선박과 관련한 안전, 환경보호 및 선원복지상 위험과 이전 기국의 책임, 항만국 관할권 등 관련 법적 쟁점은 법률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하도록 회부함.

- (선박 비치 증서 및 문서 목록 개정) 전자해도 간행물(ENP) 시스템의 비치·사용

지침(MSC.1/Circ.1705)을 '해도 및 항해 간행물'에, MASS 안전증서를 '비강제 기타 증서 및 문서'에 추가하기로 함. 관련 회람문서는 MEPC 85, MSC 112, LEG 114 및 FAL 51에 동시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임.

영향분석

HSSC 검사지침 개정은 선박검사 체크리스트, 원격검사 적용 가능 여부 및 검사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SOLAS V/23 및 Res.MSC.576(110)에 따른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사양 및 인증 유효성, 유지보수 계획·기록, 선원 친숙화 기록 및 담당사관의 통신수단 확인 등이 검사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선주·조선소·기자재업체는 관련 요건과 준비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III Code 관련 의무사항목록 개정

요약

결정사항	2028년 7월 1일까지 발효되는 IMO 강제협약 개정사항을 의무사항목록(NEL)에 반영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III 13에서 개정안을 최종화 후 A 35 채택예정('27년 12월 예상)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5/Annex 6, 7, 8

배경

의무사항목록은 III Code와 관련된 IMO 강제협약상 회원국 의무사항을 정리한 목록으로, IMSAS 감사에서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의 협약 이행상태를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됨. 최신 강제협약 개정사항을 2025 의무사항목록 (Res.A.1208(34))

에 반영하고, 기존 목록의 구조와 내용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임.

주요 논의결과

III 12/10 부속서 6을 기초로 2025 의무사항목록 개정안을 검토하고, SOLAS 하역장치·도선사용 승강장치, Polar Code, IGC Code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을 반영하기로 함.

- 해당 개정사항은 2028년 7월 1일까지 발효되는 강제협약 개정사항과 함께 계속 개발하여 III 13에 제출하고, A 35 채택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함.
- 시간 제약으로 완료하지 못한 기국 의무사항 등 목록 전반에 대한 검토는 부속서 8 및 회원국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에서 계속하여 III 13에서 마무리하기로 함. 아울러 목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프레드시트 등 데이터 관리 도구를 개발하기로 함.

영향분석

의무사항목록 개정은 회원국의 IMSAS 감사 대응, 기국·연안국·항만국 의무사항 분류 및 RO 위임관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ISM Code 이행 지침 전면 개정

요약

결정사항	ISM Code 이행 지침 전면 개정을 위한 차기 회기간 실무
------	------------------------------------

	작업반 개설 및 개정안 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미정 (III 13 및 III 14 논의를 거쳐 개정 지침 최종화 예정)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5/Annex 9

배경

MSC 110은 주관청 및 사업장의 ISM Code 이행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작업은 선원 문제 및 인적 요소 관련 공동 ILO/IMO 삼자작업반 권고, IMO 사무국의 ISM Code의 효과성 및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연구, 기존 MSC 및 III 문서의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임. 개정 대상은 A.1188(33)과 MSC-MEPC.7/Circ.8로, ISM Code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청과 사업장의 ISM Code 이행을 보다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음.

주요 논의결과

MSC 110의 지시에 따라 주관청 및 사업장의 ISM Code 이행 지침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함. 검토 대상에는 MSC 107/17/5, MSC 108/16/1, MSC 109/19/7, MSC 109/INF.3, III 9/4, III 12/12, III 12/12/1, III 12/12/2, III 12/12/3의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문서들의 제안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을 개설하여 관련 문서의 쟁점과 제안을 식별·조정하고, III 12/WP.5 부속서 9의 로드맵을 출발점으로 A.1188(33) 및 MSC-MEPC.7/Circ.8의 개정안을 개발하도록 권고함. 로드맵은 먼저 개정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후 사업장의 조직구조 변화, 안전관리책임자(DP) 역할, 안전관리시스템의 실효성, 위험관리·위험평가, 시정조치계획, 내부심사 주기,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개선방식 등을 검토하도록 구성됨. 차기 회기간 실무작업반

은 III 13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마련하고, III 14에서 지침 개정안을 최종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영향분석

향후 ISM Code 이행 지침이 개정될 경우, 주관청 및 RO의 사업장·선박 심사기준과 선사의 SMS 운영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가상·분산형 회사 조직, 디지털 SMS, 위험성평가 및 시정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침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사 및 RO는 현행 내부심사 체계,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위험관리 절차 및 부적합·시정조치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IMO 협약 조항의 통일해석

요약

결정사항	Res.MSC.581(110) 관련 제안을 포함한 IMO 안전·보안·환경 협약 조항의 통일해석 검토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비강제 지침에 대한 통일해석으로 추진되지 않아 해당 없음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13

배경

IMO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협약 조항의 통일해석에 관한 사항임. 이번 회기에서는 INTERTANKO가 Res.MSC.581(110)에 규정된 밀폐구역 진입 전 이산화탄소(CO₂)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선종별 위험 특성에 따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일해석 개발을 제안함.

주요 논의결과

통일해석은 강제 협약규정에 대한 국가·기관별 해석 차이를 방지하고 일관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비강제 지침에 적용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논의 결과, III 12는 해당 제안이 통일해석 개발 절차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반려함. 다만 동 지침의 수정 또는 추가적인 명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기구인 해사안전위원회(MSC)에 결의서 개정을 위한 신규 작업과제로 제안할 것을 권고함.

영향분석

동 논의는 통일해석 절차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음. 향후 비강제 지침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해석보다는 지침 개정, 명확화 문서 또는 관련 위원회 차원의 후속 논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소형 어선 감항성 및 안전검사 지침

요약

결정사항	소형 어선의 감항성 및 안전검사 지침과 관련 체크리스트를 명확성 개선 중심으로 최종화
관련 산업계	☒ 선사 ☐ 조선소 ☐ 기자재 ☒ 기타 (주관청)

적용일	MSC 112 승인 후 FAO/IMO 공동 간행물로 배포 예정
영향	☐ 설계 ☐ 운용 ☒ 미미함
출처	III 12/WP.8

배경

소형 어선은 보험 접근성과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분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국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감항성 및 안전검사 지침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은 동 초안을 검토하여 실제 검사에 활용할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함.

주요 논의결과

동 지침은 케이프타운 협정 적용대상인 24m 이상 어선을 제외한 소형어선의 선체, 복원성, 안전설비, 항해·통신장비 및 기관·전기설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자발적 지침임.

- 적용 대상은 길이 12m 미만의 갑판 있는 어선과 크기와 관계없는 무갑판 어선으로 하며, 지침은 보험서비스 제공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문가그룹은 어선 및 선박검사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목선 손상 여부, FRP 피복 목선, 비상절차, 개인용 부력장비 및 통신설비 관련 사항을 보완함.

영향분석

동 지침은 자발적 지침으로 산업계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회원국의 소형 어선 검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사단법인 한국선급

검사업무팀, 협약업무팀, 법령업무팀

작성자 박정열 수석검사원, 송우빈 책임검사원, 김용진 선임검사원

Tel +82 70 8799 8213 / 8336 / 8309

E-mail psc@krs.co.kr

Disclaimer

While every possi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technical information, the Korean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any errors or omissions contained herein, nor shall it be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technical information.